

#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

제출자 : 평창군수

#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14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2. 4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·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주변지역의 지정 (안 제3조)

-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지역(읍·면) 주민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결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### 나. 군수의 책무 (안 제4조)

-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, 주민·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다. 군민의 책무 (안 제5조)

- 군민은 자원화시설 운영 및 군수가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# 라. 주변지역 지원 (안 제6조)

-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### 마. 재정지원 (안 제7조)

-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 주변지역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할 수 있다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불입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서협의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12. 2. 22 ~ 3. 13(21일간)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##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·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음식물자원화시설”(이하 “자원화시설”이라 한다)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(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) 처리하여 사료·퇴비·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2. “주변지역”이란 자원화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.

**제3조(주변지역의 지정)**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지역(읍·면) 주민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결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군수의 책무)**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, 주민·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군민의 책무)** 평창군민은 자원화시설 운영 및 군수가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주변지역 지원)**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지원)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 주변지역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미 설치된 자원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자원화시설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제4조(군수의 책무)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, 주민·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주변지역 지원)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지원)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 주변지역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할 수 있다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비용추계 산출이 어려우며 향후 관련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.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환경과 환경과장 전완택
연락처	(033) 330 -2340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폐기물관리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2010.7.23>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,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7.8.3, 2010.7.23>

②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고,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8.3>